

의안번호	제 38 호
의 결 년 월 일	1998 년 11 월 26 일 (제 79 회)

의 결 사 항
결안가결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월일	1998 . 11 . 24 .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
------------	----

제출년월일 : 1998. 11 . 11 . 24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1. 제 안 이 유

- 공영주차장 18개소 40,900m² 설치운영되어 있으나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 주차장(공영)이 없어 제2조(세입) 재원이 전무하며, 주·정차 과태료로만 매년 약600만원정도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지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세출 관련 조문정비로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 직제개편에 따라 조직을 일부 변경함.



2. 주요골자

- 제3조(세출)중 기타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난 신설
(기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 제4조중 “경제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3.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 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4. 사전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 첨부 1.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문대비표
 3. 기타참고자료(근거법령,지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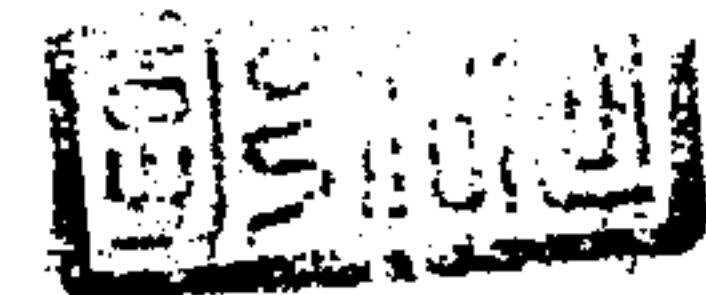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중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을 “주차장 시설의 확충”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기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제4조중 “경제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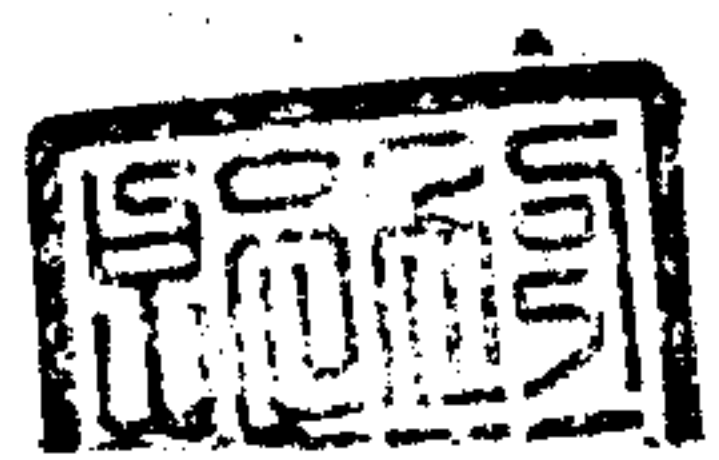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세출】 이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2 (생략) 3.<u>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u> (신 설)	제3조 【세출】 ----- ----- 1 ~ 2 (현행과 같음) 3.<u>주차장시설의 확충</u> 4.<u>기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u>
제4조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본 회계의 분임징수관은 <u>경제과장</u>으로 한다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u>종합민원실장</u>-----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駐車場法 [1979. 4. 17 法律 第3165號]	주차장법시행령 [1990. 8. 3 대통령령 제13066호전문개정]	주차장법시행규칙 [1990. 12. 24 건설부령 제474호전문개정]
改正 1983.12.31 法律 第3708號 1990. 4. 7 法律 第4230號 1990.12.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 1991. 5.31 法律 第4381號(建築法) 1991.12.11 法律 第4437號 1995.12.27 法律 第5115號 1996. 6. 4 大統領令 第15017號	개정 1991. 4.23 대통령령 제13359호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2. 5.30 대통령령 제13655호 (건축법시행령) 1992. 6.30 대통령령 제13672호 1995. 2.18 대통령령 제14530호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7호	개정 1991. 4.26 건설부령 제482호·교통부령 제950호 1991. 9. 5 건설부령 제492호·교통부령 제958호 1992. 9. 5 건설부령 제513호·교통부령 제984호 1994. 5.26 건설부령 제554호·교통부령 제1026호 1995. 8. 5 건설교통부령 제 27호 1996. 6.29 건설교통부령 제 69호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駐車場의 設置·整備 및 管理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을 正當으로써 自動車 交通을 원활하게 하 여 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 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駐車場の設置を促進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路外駐車場の設置에 관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83.12.31)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の設置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の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를 알선할 수 있다. ③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第1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아 駐車場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 그 費用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필요한 資金의 融資를 알선할 수 있다. (改正 '83.12.31, '90. 4. 7)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5. 2.18)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 (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第21條의2(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等) ①特別市長·廣域市長,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場의 효율적인 設置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駐車場特別會計를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 또는 郡守가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 1. 第9條第1項 및 第3項,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등의 收入金과 第1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 設置를 위한 費用의 納付金 2.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라 함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課徴金の 徴收金 3.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4. 政府의 補助金 5. 都市計劃稅 徴收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率의 금액 6.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徴收金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廳長이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第2項第1號의 收入金 및 納付金중 당해 區廳長이 設置·관리하는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の 駐車料金과 大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⑦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地方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가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會計에 이 法에 의한 駐車場特別會計를 統合하여 運用할 수 있다. [全文改正 '91.12.14] 第21條의3(駐車場管理專擔機構의 設置)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 또는 郡守는 駐車場の 設置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企		
業을 設置·경영할 수 있다. [本條新設 '91.12.14] 第22條(駐車料金등의 使用制限)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9條第1項 및 第3項과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받는 駐車料金등은 駐車場の 設置·管理 및 運轉외의 用途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改正 '91.12.14) [全文改正 '83.12.31] 第22條의2(자료의 要請) ①建設交通部長官은 駐車場の 構造·設備基準등의 制定, 機械式駐車場の 安全基準의 制定 기타 駐車場の 設置·整備 및 管理에 관한 政策의 수립을		